

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11. 21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정 이유

풍수해대책법 제3차 개정(법률 제4993호, 1995. 12. 6)으로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변경 전문개정하여 시행하므로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정한 “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(1988. 5. 1 조례 제45호)”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개정함.

2. 주요 골자

가. 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 점검·정비와 재해 발생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, 재해응급대책등 임무를 수행 (안 제2조)

나.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 거주민 및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본부 및 경계반, 복구반, 구호반으로 편성하여 소집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조 내지 제5조)

3. 관계법령

-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 제2항

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하구수방단(이하 “수방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·정비
2.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
3. 법 제23조 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
4.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
5.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수방단원은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
2.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제1항 제1호의 주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.

1.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
2. 고교생 및 대학생
3. 경찰관 및 군인
4.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

제4조(단장) ①사하구수방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수방단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②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.

제5조(편성)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본부 및 경계반 : 10명 내외
 - 가. 주민대피 유도
 - 나.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 유지
 - 다.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
 - 라.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
 - 마.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
2. 복구반 : 30명 내외
 - 가.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·정비
 - 나.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
 - 다.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
 - 라. 재해지구의 정리·정돈
3. 구호반 : 10명 내외
 - 가.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
 - 나. 사망자,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
 - 다. 재해발생지역의 방역 실시
 - 라.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

제6조(소집해제 및 기록보존) ①구청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원이 소집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

②구청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